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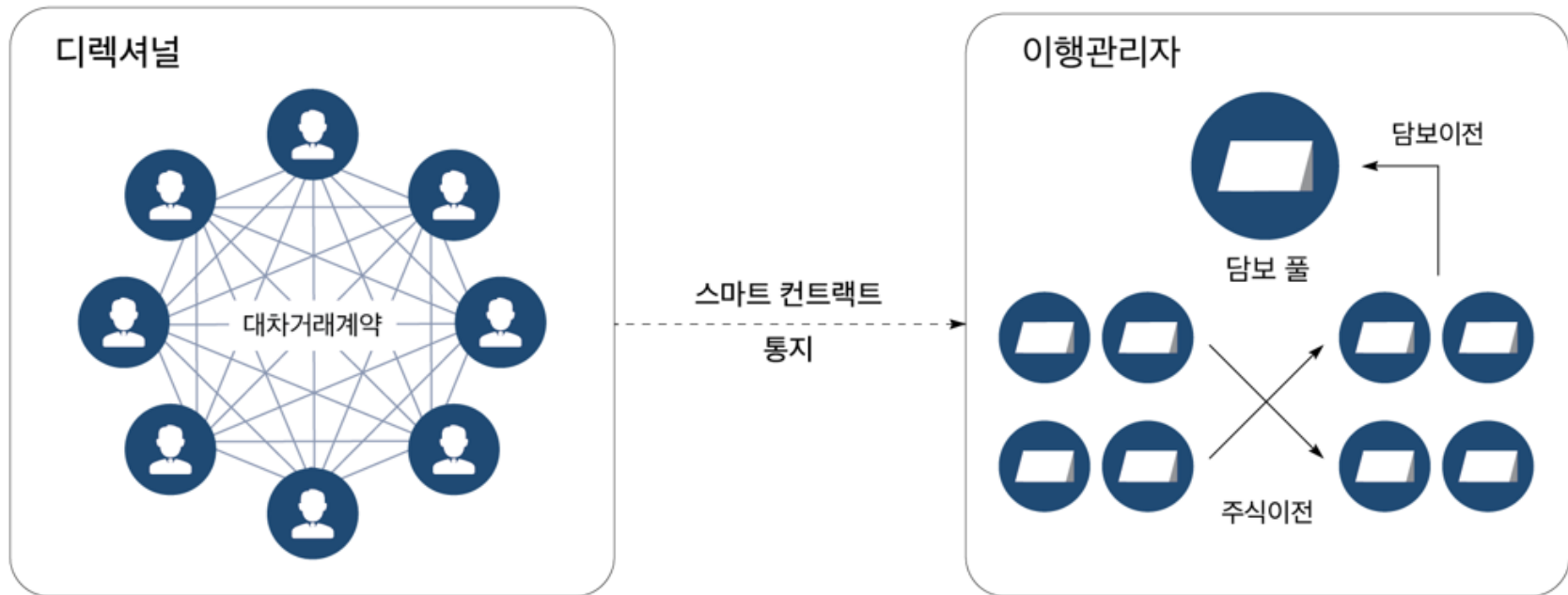


DIRECTIONAL

금융의 균형을 잡다

신청 서비스 개요

블록체인 기반의 P2P 주식대차 서비스



- 투자자의 자본력, 거래 규모, 정보의 접근성 등에 관계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합리적인 주식대차 서비스 경험 가능

서비스의 혁신성 및 소비자 편익

서비스의 혁신성

- 1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용자 편의성 증대
- 2 블록체인 도입을 통한 대차거래의 투명성 달성
- 3 머신러닝 알고리즘 도입을 통한 플랫폼 고도화

소비자 편익

- | |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대여자 | 공정한 대여 수수료 수취 |
| 차입자 | 균형 잡힌 양방향(롱/숏) 투자기회 |

서비스의 안전성



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

주식대차 중개 업무에 대한 자본시장법령 상 규정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음

1. 주식대차 중개 업무를 위해 투자중개업 인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이론이 있음

- **갑설** – 주식대차 중개 업무는 투자중개업자의 겸영업무이므로 투자중개업 인가 불요.
- **을설** – 투자중개업자만 주식대차 중개 업무를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 존재하므로 투자중개업 인가 필요.

2. 그러나 투자중개업 인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겸영업무를 하기 위해 인가를 받거나 유지할 수 없음